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사항(2008.12.31)을 반영하여
 -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 마련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상위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임용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 제선(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일 경우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 가능(안 제11조제2항)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에”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u>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에</u>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p> <p><u><신 설></u></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u>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u>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 4. (생략)</p>	<p><u>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 ----- ----- ----- ----- ---.</p> <p>제2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 제2조제3항제2호의</u>----- ----- --.</p> <p><u>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u> <u>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제10조(직권면직) ----- ----- ----- -----.</p> <p>1. ----- 「<u>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 -----</p> <p>2.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u>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p> <p>1. <u>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또는 소집된 때</u></p> <p>2. <u>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p> <p>제11조의2(휴직기간) <u>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략)</p> <p>② <u>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p>제12조(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u>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결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p> <p>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u>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p> <p><삭제></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u> ----- ----- -----</p> <p>③ ----- ----- <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u>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 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u>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u>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3조(징계) ----- ----- 「<u>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u>」 -----.</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

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 6.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이내로 한다.

9. (생략)

제65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